국내 화재원인조사 체계의



1. 머리말

형사소송법에서 실체적 진실주의(實體的 眞實主義) 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인정에 관해 객관적인 자세로 진실을 추구한다는 이념을 말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화재조사 또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의 기초 위에서 진실에 부합하고 올바른 법률적용을 통 해 화재의 진의(眞義)를 밝혀 피해당사자는 물론 화 재조사 관련기관들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합목적 적(合目的的)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화재조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올바 르게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은 어느 때보다 절실 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2. 화재조사에 대한 환경 및 인식 변화

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과거에는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건물로 연소확대 되더라도 경미한 과실은 서로 덮어주거나 어느 정도 이해해 주려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 러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 고 이에 따른 권리구제 제도가 강화되면서 화재로 인한 경미한 과실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현실이 되 었다. 과실의 경중(輕重)에 따라 책임 정도와 피해보 상 범위가 정해질 것이며 화재원인을 비롯한 건물의 임대차관계 등으로 다툼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나. 민간조사의 등장

화재로 인한 권리구제 및 피해회복을 위해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결렬될 경우 소송으로 비화될수밖에 없다. 이때 일반 국민들은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전문성과 시간적 제약으로 인

한 한계에 부딪쳐 민간전문가에게 사실조사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민간조사가 발전한 미국이 나 영국 등에서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사건을 의뢰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민간조사 기구의 등장으로 공기관의 화재조사 행정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경쟁력을 갖 취야 할 것이다.

다. 민 · 관 공동연구 및 협력 지원 등 인식의 전환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 화재조사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와 노력이 한층 높아지게 되어 소방 주도하의 학회가 발족한 것을 비롯하여 기관별 업무협약 체결,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실물화재실험 재현 등민·관 상호 협조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화재조사 기술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며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공조체제는 앞으로 실제 화재현장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와 조사를 실시하여 납득할 만한수준의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3. 국내 화재원인조사 체계의 문제점

가. 화재조사기관의 다원화

국내 화재조사의 터전은 상당히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부분이 많다. 소방을 비롯하여 경찰, 보험사, 전기, 가스 등 관련 기관마다 뚜렷한 목적을 두고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당부분 화재예방과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있고 대국민 홍보와 적정한 보상등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관별로 조사 착수시기와 조사방법 등을 달리하는 독자노선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아 이로인한 정보의 공유가 미흡하고 각기 다른 원인조사결과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얻어내는데 불충분한 측

면이 상존하고 있다.

현행 화재조사활동은 소방이 화재진압과 동시에 가장 먼저 실시하고 있으나 진압이 종료된 후 경찰이 수사활동을 전제로 참여하고 있으며, 보험사 및 위험물, 가스, 전기 등 발화원또는 가연물의 성격에 따라 각종 기관이 직·간접적인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다수의 기관이 참여하는 조사방식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효율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정보 공유도 배타적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은 걸림돌이아닐 수 없다. 발화장소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비롯하여 발화원인과 화재발생 경위, 원인조사 과정에 대한 공조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화재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참혹한 경우가 많다. 대다수의 가연물질은 물리적, 화학적으로 변형되거나 소실되었고 수많은 퇴 적물로 뒤덮여 있는 경우가 많아 기관별 독자 적인 조사 수행에는 시간적 · 비용적으로 한계 에 부딪칠 수밖에 없으며, 조사가 장기화할 경 우 사회적 손실비용은 그 만큼 증가할 것이다.

나. 화재감정기관의 절대적 빈곤

화재관련 발화원의 성분과 재질, 발화가능성 등 감정업무를 관장하는 곳은 국내에서는 국립 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존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소방 연구기관과 학술단체, 대학 연구소 등에서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중요 화재에 대한 현장감식과 감정업무는 지금까지 국과수가 크게 기여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해마다 국과수에서 처리하는 감정건수가 전국 화재발생 건수 4만여 건 가운데 10% 미만임을 감안하면

감정기관의 다양화가 이루어져 공존하는 방안 이 모색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모든 주(州)에 하나 이상의 화재 원인조사 및 범죄수사를 위한 시험기관이 민간 영역과 공공영역으로 구분하여 다양하게 존재 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소방청을 비롯한 동 경, 교토, 오사카 등 중앙과 지방에 10개의 화 재감정 및 위험물 판정에 대한 소방연구소를 두어 활발하게 감정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다. 화재조사권과 화재수사권 집행의 불균형

소방은 소방기본법에 근거한 조사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경찰은 형법에 기초한 수사권을 검사의 지휘아래서 행사하고 있다. 소방의 법률행위는 화재진압뿐만 아니라 화재가 종료된후에 본격적으로 화재조사를 수행하는 경우가많은데 화재관련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소방과 경찰로부터 이중적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 심적 부담이 따르고 있다. 조사권과 수사권은 적용하는 법과 목적이 다르지만 소모적인 행정은 없는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화재가 종결된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 소방에서는 화재증명원을 발급해주고 있고 경찰에서는 사실확인원을 발급 처리해 주고 있는데 어느 것의 쓰임이 더크고 의미 있는 것인지 짚어볼 가치가 있다.

4. 대책

가. 화재규모별 합동조사단

각 시·도별로 소방과 경찰, 유관기관별 전문 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의 편성은 다원화된 현 행 체제를 하나의 단일 창구로 통일시킬 수 있 으며 통제와 의견조율이 가능하여 능률성을 기 대할 수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화재 피해자에 대한 빠른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사회적 비용과 마찰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조사방식은 모든 가능성을 폭 넓게 열어 놓고 조사를 진행함으로서 방화범죄가 설 땅을 근본적으로 좁혀 사회 안전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사회적으로 중요화재가 발생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화재에 대하여 국가화재조사팀(National Response Team)이 관여하고 있고 주정부(state)에서는 대형화재 및 방화가 발생한경우 소방을 팀장으로 하여 경찰, 보험회사 등으로구성된 방화조사팀(Arson T/F팀)이 활동하고 있다.

나. 소방중심의 화재감정연구소 운영

현재 국과수에서 수행하고 있는 감정업무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의뢰하는 감정물에 한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수사와 관련된부분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범죄수사를 위한범법행위 유무 판단은 현행처럼 국과수에서 담당하고, 화재예방 및 피해저감과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부분은 소방주도하에 화재감정연구소에서 담당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소방방재청에서 집계한 지난 2009년 화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총 47,318건이 발생하였는데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22,763건(48%)이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주거시설에서 11,767건이 발생하여 24.9%를 차지하였다. 대부분의 화재가 주거시설에서 부주의로야기된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안전 확보를 담보로한 소방조직 내부 감정기관이 설립되어 화재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명실상부하게 화재조사의 연구 메카로 부상(浮上)시켜야 할 것이다.

다. 화재수사권에 대한 제도 개선

국내 실정법은 화재조사는 소방이 담당하고 방 · 실화 전체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여 이원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오래전부터 국민들에 게 심적으로 이중적인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논의되어 왔는데, 조사와 수사라는 측면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이기도 하지만 상충되는 측면도 지니고 있다. 2008년도 소방방재청에서 집계한 방화건수가 3,506건인 반면, 경찰이 집계한 방화건수는 1,701건으로 나타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관별 방화건수에 차이가 있어 화재피해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화재조사 및 화재수사의 난맥을 제도적으로 짚어 보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제도적 검토가 적절한 시기에 검토되어야 한다.

5. 맺음말

화재조사는 궁극적으로 화재의 근본을 밝혀 유사 화재를 방지하고 범법행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사 회 안전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공공의 안전 확보는 어떤 이유로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리 사회가 지켜가야 할 대의명분인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관별 합동조사 형태의 협의체가 필요하며 화재 위험성에 대한 연구 및 감 정 업무를 소방기관 중심으로 재편하여 확대할 필요 가 있는 것이다.

중국의 한 최고책임자는 "소방의 책임은 태산보다 무겁다(消防責任重於泰山)"는 말로서 소방의 책임 과 사회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기도 했는데, 미래 지향적인 화재조사 체제의 논의는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과 예방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전문분야 로 발돋움할 기틀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M)